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8. 23. 선고 2019고단 390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청 주 지 방 법 원 충 주 지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390 야간주거침입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김민수(기소), 전화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성배(국선)

판결선고 2019. 8. 23.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 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7. 03:00경 충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현금 70,000원, 시가미상의 수첩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 6. 26. 00:30경 충주시 D원룸 1층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외국인등록증,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가. 피고인은 2019. 6. 20. 05:02경부터 같은 날 05:44경까지 충주시 G아파트 앞 노상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H)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I(여, 61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전화하여, "I아, 나 C(제1의 가항 절도 피해자의 성명)이야. 나너랑 섹스하고 싶어서 전 화했어. 나 사실 학교 다닐 때부터 너를 좋아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9. 6. 20. 05:49경부터 같은 날 06:17경까지 위와 같은 공중번화부 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 58세)에게 6회에 걸쳐 전화하여, "J야, 너 나하고 한번 했잖아. 섹스 한 번 했잖아 나하고. 여기 모텔로 올래? 너 어딘데? 올 때 빨간 팬티 입고 와. 너 할 때 소리 잘 지르더라. 가슴도 크고, 브라자 차지 말고 올래. 나 지금 꼴려서 너 빨아줄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9. 6. 26. 00:43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위와 같은 공중전화부 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5회에 걸쳐 전화하여 "J야, 나야. 저번에 섹스했 던 애. 오늘은 흰 브라자하고 흰 팬티 입었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 라. 피고인은 2019. 6. 26. 00:45경 위와 같은 공중전화부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나하고 한번 하지. 뭐 어때. 야너 가슴 빵빵하잖아. 너 다른 남자 랑은 다 주면서 왜 나는 안줘. 내 좆을 비틀어 1아. 나하고 한번 하자 그럼. 노팬티로 올래? I이 너 젖가슴 크잖아. 야 I아 내 자지 크다. 너 한번 맛족 볼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F의 진술서
-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 1. -사진
-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화내역사진, 녹취록, -녹음파일 CD
-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화내역사진, 녹음내역
-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CCTV 파일 CD
-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 조(통신매체이용음란,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정도, 범행의 방법,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 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침입절도의 위험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 범행 방법과 수단,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 판사 남천규